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낙동강 침몰 준설선(4대강공사) 안전조치 소홀 등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관 련 자 김해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7. 1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낙동강 침몰 준설선 방치 건과 관련 한 업무담당자이다.

정부에서는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산·경남지역 낙동강 정비를 위해 많은 장비들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하상준설을 위한 준설선이 많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당시 투입된 준설선이 녹슨 채 방치되고 있고, 특히 경남지역 낙동강에는 아래 현황과 같이 16척의 준설선이 계류장 또는 그 외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16척의 준설선 중 4척은 침몰되어 있어 어업인의 어로행위, 선박운행의 장애 및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침몰된 선박에서 유류유출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하천관리청(○○국토청)과 지자체(김해시, 부산시)에서는 조속히 인양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준설선 16척 정박 현황〉

구간	위 치			정박대수			비고
				계	허가	비허가	
계	4시군 6개소(계류장 3개소)			16(4)	11(1)	5(3)	
경남 (○○○○독 ○○○○보)	창원시	○○면 ○○리	계류장	2	2		
	김해시	○○면 ○○리	계류장	8	4(1)	4(3)	
		○○면 ○○리		1		1	고발조치
	밀양시	○○○읍 ○○리		1	1		
		○○읍 ○○리		1	1		
	의령군	○○면 ○○리	계류장	3	3		

※ (내서)는 침몰선

이와 관련 최근 J○○C 뉴스보도(2016.11.16.)에서는 “식수원도 위협…버려진 4대강 준설선” 주제로 방영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경남 김해의 낙동강 변에는 4대강 사업이후 준설선 20여척이 방치되어 있고, 방치된 준설선에서 기름이 밖으로 유출되어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준설선 중 4척은 침몰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방치된 준설선이 취수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식수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보도만 아니라, Y○N(2013. 10. 20.) “버려진 준설선…낙동강의 잠재적 ‘시한폭탄’”에서부터 경남일보(2016. 11. 14.) “낙동강 폐준설선 해체 이전요구”까지 여러 언론매체에서 낙동강에 방치된 준설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4대강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2016. 11. 30.)까지도 침몰 준설선 등이 낙동강에 방치되어 있어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방해하고 선박 운항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식수원마저 위협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서는 제4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다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비, 공사 및 그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5조(벌칙)에서 제46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천공사로 인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밖의 하천 상황과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는 하천의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서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를 포함하며,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는 전복·침몰·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전되는 경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 선박 등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 등의 상태 및 발견 장소, 해당 방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제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과-○○호(2015. ○○. ○○.)와 관련하여 하천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의 제거를 「공유수면법」 제6조 등 관련하여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도, 김해시(○○과)에서는 아래 현황과 같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에 침몰된 준설선 4대를 처리함에 있어,

〈침몰 준설선(4대-경남, 1대-부산) 현황〉

침몰일시	장비명	소유자	장비종류	침몰위치	침몰사유	비고
‘11년11월	○○○ (○○○-○○○) 100톤급	○○○	기선 (선박)	김해시 ○○면 ○○리	노후 및 관리소홀	고발조치
‘12년 9월	○○○ (○○○-○○○) 156톤급	○○○	부선 (선박)	부산시 ○구 ○○동	태풍‘산바’시 유실	부산시 소관
‘13년 1월	○○○ (○○○-○○○) 218톤급	○○○	준설선 (건설기계)	김해시 ○○면 ○○리	겨울철 동파	고발조치
‘14년 1월	○○○ (○○○-○○○) 90톤급	○○○	기선 (선박)	김해시 ○○면 ○○리	노후 및 관리소홀	소송중
‘16년 6월	○○○ (○○○-○○○) 89톤급	○○○	기선 (선박)	김해시 ○○면 ○○리	관리소홀 (반침몰)	하천점용 (~‘17.05.)

○○국토청에서 2015. 7. 6. ○○신문 언론보도(2015. 6. 2.) “4대강 준설선 녹슨 채 낙동강 방치”와 관련하여 김해시에 낙동강 침몰선 조치 협조를 요청하면서, 낙동강 침몰 준설선을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법」을 적용하여 조

치토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법규적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하였음에도, 김해시에서는 2015. 8. 24. ○○국토청에 「공유수면법」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저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침몰된 선박에 적용이 곤란하고, 부산국토청의 자체 수중조사결과 유류유출 및 기타 피해우려가 없다는 보고서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공유수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2015. 9. 8. ○○국토청 주관 침몰선박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T/F팀 대책회의(1차)에서도 낙동강 침몰 준설선을 「공유수면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양하고, 비용은 ○○국토청에서 지원하므로 김해시의 적극적 처리를 요청하였고, 2015. 12. 22. 관계기관 T/F팀 대책회의(2차)에서도 「공유수면법」에 따라 침몰 준설선 조치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김해시에서는 침몰된 준설선 처리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업무를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2016. 3. 17.과 2016. 5. 30. 등 ○○국토청은 수차례 침몰준설선 처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간 협조공문 및 T/F팀 대책회의에서 침몰 준설선을 「공유수면법」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주지하였음에도, 김해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고발 등 조치하지 아니하고,

2016. 6. 2. 법무법인 ‘모든’에 침몰 준설선 처리를 하면서 「공유수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침몰 준설선 처리 업무지연으로 2차적 안전 위협과 식수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과)에서는 하천 담당자가 2016. 8월 홍수로 인하여 기하천 중간 부분에 침몰한 침몰선의 위치표시를 위해 설치하였던 부표 등이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상급자에게 내부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준설선 중 하천제방 옆 침몰 준설선에 대한 부표 일부가 훼손 되어 있고, 낚시객 출입 통제 안내문

과 정박장 진·출입 방지시설 및 위험표지 등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여 무단 출입자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등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침몰 준설선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인양 또는 철거 조치하여 안전사고 및 하천 오염을 방지 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침몰 준설선에 대한 안전부표 조속 설치 및 낚시객 등 준설선이 정박되어 있는 하천제방 등에 대한 진출입 방지 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